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두도록 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소방청장이 둘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, 현재 민간위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8. 29. ~ 8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둔다”를 “둘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·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)	제2조(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)
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둘 수 있다.</u>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③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</u>	<u><삭 제></u>
④ 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	④ <u>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·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
⑤·⑥ (생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5 - 7284